

# 선거관리규약

2023년 3월 25일 제정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목적)

본 규약은 우분투한국커뮤니티(이하 “단체” 라 한다) 정관 제9조 제1항에 의한 단체 대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3조 (선거관리)

본 규약에 의한 선거관리는 특별한 규약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.

### 제4조 (선거인)

본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회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.

### 제5조 (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)

- 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단체에 가입된 정회원과,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인 등록 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 통과한 준회원으로 한다.
-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- 단체에 가입된 정회원과, 가입 만 1년 이상 경과한 준회원 중 정회원 가입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자.
  - 민법상 제한능력자가 아닌 자.
  -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자.
  - 단체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.
  - 정관과 부속 규약 및 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.
-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.
  - 정관 제7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.
  - 정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.

##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

### 제6조 (구성)

-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작 40일 전 까지 총회에서 위촉한 정회원과, 총회의 심의 절차와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한 준회원으로 구성하며, 3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.
-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당선인의 임기 개시일 10일 후까지로 한다. 단,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기간 동안 연장된다.

### 제7조 (직무와 기능)

-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  1. 선거 공고 및 관련 사무
  2. 후보자 자격 심사 및 등록
  3.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
  4.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
  5. 선거 관리와 투표 및 개표 관리
  6. 당선인 확정 및 공고
  7. 선거 관리 규약 위반자 감시 및 제재
  8.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및 선거 관련 유권 해석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거공고를 선거 시작 30일 전 까지 공고한다.
  1. 선거인 등록 기간 및 등록 절차
  2. 후보자 등록 기간과 자격 요건 및 등록 절차
  3. 선거일 또는 선거 기간
  4. 선거 절차와 선거 및 개표 방법
  5.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
- ③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거나,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.
- ④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, 이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.

## 제3장 후보자

### 제8조 (후보자 등록)

입후보 하고자 하는 피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자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,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9조 (후보자의 공고)

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 후 등록 마감 3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성명, 단체 활동 경력, 공약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 또한,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후보자 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10조 (주의 및 경고)

- ① 제14조(금지사항)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명령 해야 하며 주의 처분을 해야 한다.
- ② 입후보자가 전 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경위를 공고해야 한다.

### 제11조 (자격의 상실)

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후보자 등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 된 때.
2. 고의적으로 제출한 입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 된 때.
3. 제출한 입후보 등록 서류가 관계 규약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은 때.

-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의 추가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.

#### 제12조 (후보자의 사퇴)

-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입후보 등록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며, 이 사실을 즉시 공고한다.

## 제4장 선거운동

#### 제13조 (선거운동)

-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선거 시작 전일 까지로 한다.
-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을 따른다.
-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단,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.

#### 제14조 (금지사항)

선거운동기간 중 각 후보와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, 숙식,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
-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-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
- 기타 정관이나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

## 제5장 선거 및 투표

#### 제14조 (선거일 또는 선거기간)

- 선거는 재임자 임기가 끝나기 3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선거일 또는 선거 기간 중에는 일체의 선거 운동, 유세, 지지 활동 등을 할 수 없다.

#### 제15조 (선거방법)

- 선거 방법은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는 방법이어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거소투표나 현장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  - 각 선거권자 1인 1표
  - 무기명 투표
- 그 외 선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에 명시한 사항을 따른다.

## 제6장 개표 및 당선

#### 제16조 (개표관리)

-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선언 이후에 실시한다.
-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, 총회에서 추천된 1명 이상 5명 이하 참관인이 입회하여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.
-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.

- ④ 전 항의 공고에는 총 선거권자 수, 총 투표 수,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⑤ 그 외 개표관리 및 개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에 명시한 사항을 따른다.

#### 제17조 (무효표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.

- 1.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
- 2.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
- 3. 전자투표의 경우 중복투표로 판정된 것
- 4. 기타 본 규약에서 무효로 정한 것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로 정한 것

#### 제18조 (당선인 결정 및 공고)

- 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인의 찬반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며, 총 유효표 수 중 과반 이상의 찬성득표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
- ②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,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당선인이 준회원인 경우, 즉시 정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.

## 제7장 재선거와 이의신청

#### 제19조 (재선거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,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.

- 1. 단일입후보시 과반수 이상 찬성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.
- 2.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로 된 때.
- 3.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무효로 판명된 때.
- 4. 준회원인 당선인이 정회원이 되지 못하거나 정회원 가입을 거부한 경우, 당선무효에 해당하며 재선거를 실시한다.

#### 제20조 (이의신청)

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, 그 즉시 또는 투표 마감 48시간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,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하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21조 (규약위반처리)

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정관 또는 본 규약의 위배,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.

- 1. 선거무효
- 2. 당선무효
- 3. 경고처분
- 4. 주의처분

## 제8장 보칙

#### 제22조 (선거관리규약의 해석)

선거관리규약의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.

제23조 (개정)

본 규약의 개정은 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총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한다.

부 칙

본 규약은 총회 심의 절차 통과 즉시 시행한다.